

창원지방법원 2022. 7. 8 선고 2021가단11702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

담당변호사 안성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6. 10.

판 결 선 고 2022. 7. 8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 중 2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, 김해시 C 대 9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6, 7, 8, 5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지상 조적조 창고 12㎡를 철거하고,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 김해시 C 대 99㎡(이하 ‘원고 소유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인접 토지인 D 대 321㎡(이하 ‘피고 소유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, 7, 8, 5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(이하 ‘계쟁 토지’라 한다) 지상 조적조 창고 12㎡(이하 ‘계쟁 건물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인 사실, 피고는 계쟁 건물의 소유로써 계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쟁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, 계쟁 토지 지상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,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원고에게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, 계쟁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. 5.경 원고에게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, 계쟁 토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,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임의로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 계쟁 토지를 인도한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, 제100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강진명